

대한고혈압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운영규정

제정 : 2017.08.17

제1조(명칭) “대한고혈압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운영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학회) 고혈압 분야의 주요 해외학회 ASH (미국고혈압학회), ESH (유럽고혈압학회), JSH (일본고혈압학회) 국제학회로 한다. 이외의 해외학회 지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선별적으로 결정하고 고혈압관련 국제학회 지원여부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지원범위) 항공료, 숙박비, 등록비, 식대, 현지 교통비 항목으로 한하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3개 협회'라 한다)의 공정경쟁규약 및 정산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5조(신청자격) 대한고혈압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날까지 이메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서(별지서식1), 초청메일 또는 채택메일, 초록사본 등 증빙자료를 접수해야 한다.

제7조(선정)

제1항(선정위원회 구성) 위원은 대한고혈압학회 정책이사, 국제교류이사, 총무이사, 총무단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이사장이 구성한다.

제2항(선정 기준) 신청자 중 '1. 신청 기본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2.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1. 신청 기본 요건

1) 대한고혈압학회 정회원

2) 초록 1편당 2인 지원 신청(편당 2인 지원 신청 시 그 선정여부는 병원 별 초록 수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우선순위

1) 1순위 : 초청자(연자, 좌장, 패널), 경쟁부문 수상자(YIA등), 구연채택 발표자로 한다.

2) 2순위 : 40세 이하 혹은 전임의(2점), 최근 5년간 Clinical Hypertension지에 주저자/ 교신저자로 논문게재 건수(편당1점), 최근 2년간 대한고혈압학회 춘,추계 학술대회 등록(①2년 동안 모두 참석(2점))

제3항(선정 통보) 선정위원회는 신청 마감일 후 14일 이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 선정자를 개별통보 한다.

제4항(선정자 변경불가) 선정된 이후 동일 초록의 다른 저자로의 지원자 변경은 불가하다.

제5항(선정인원 여유분에 대한 처우) 제6조에 명시된 신청마감일 이후의 신청요청은 기각한다.

제8조(수혜자 의무)

제1항(품위유지) 본 규정으로 지원을 받는 수혜자는 해외학술대회 참석 시 대한고혈압학회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2항(정산서류 제출)

본 규정에 의해 지원받은 수혜자는 학술대회 참석 후 1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결과보고서
2. 항공 탑승권 및 영수증 등
3. 학회 등록비, 숙박비 결제 영수증 및 현지교통비, 식사비 영수증 원본

제3항(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제4조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부칙)

제1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항 본 규정은 대한고혈압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